

의안번호	2211476
의 퇴 인	임호선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4.
추 계 번호	25B3779
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 여부를 검사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2,500만원(연평균 4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약물·환각물질 검사 (안 제40조)	43	44	45	46	47	225	45

주: 1. 해양경찰청의 음주 측정 업무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약물·환각물질 검사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0조(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)	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·환각물질을 투약, 흡연 및 섭취(이하 “투약등”이라 함)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함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을 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함(제2항 신설) 1.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·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.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	재량/의무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함(제3항 신설)	재량/의무 규정
		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(제4항 신설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40조(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)	○	해양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선박 운항자 등에 대한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 검사(안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

- 개정안은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해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 여부를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약물 등 검사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현행법 제39조¹⁾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및 합정 근무 경찰관이 현장 음주 측정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(최근 5년간 연평균 32,539건), 음주 측정기 구매 등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2억 700만원임

[표 2] 선박 운항자 등 음주측정 수행 경찰 인원

(단위: 명)

파출소 인원	합정 인원	합계
2,716	4,206	6,922

자료: 해양경찰청

1) 제39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)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(이하 "운항자"라 한다)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(이하 "도선사"라 한다)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
3.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
[표 3] 최근 5년간 현장 음주 측정 현황

(단위: 건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현장 음주 측정	36,541	35,470	28,298	30,867	31,520	32,539

자료: 해양경찰청

[표 4] 선박 운항자 등 음주 측정 관련 예산(2025년)

(단위: 백만원)

음주 측정기 신규 구매	음주 측정기 검·교정	합계
123	84	207

자료: 해양경찰청

○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선박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 여부를 검사할 경우 약물·환각물질 검사 시약 등 구매를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2,500만원(연평균 4,500만원)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- 해양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약물·환각물질 투약 의심 등 이상행동자 검사 횟수를 음주 측정 횟수의 5% 수준인 연 1,600회로 가정
- 개정안의 약물·환각물질 투약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업무는 현재 경찰 인원을 활용하여 수행하고, 간이시약 등 구매 비용만 반영(2024년 마약류 타액 간이시약 단가 26,000원에 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²⁾ 적용)
- 개정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물·환각물질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 및 간이시약 검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또는 소변검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검사 실시를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약물·환각물질 간이 검사 시행자 중 양성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 및 간이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모발검사 또는 소변검사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함

·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, 마약류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는 사용이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5. 3.)

(단위: 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 물가상승률	2.3	1.9	2.0	2.0	2.0	2.0	2.0

의심되는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시험방법 및 사용 시약 등이 달라 검사 1회당 단가를 특정할 수 없음

[표 5] 선박 운항자 등 약물·환각물질 검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약물·환각물질 측정	43	44	45	46	47	225	45

주: 1. 해양경찰청의 음주 측정 업무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약물·환각물질 검사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해양경찰청의 음주 측정 업무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약물·환각물질 검사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assembly.go.kr